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5,663,112	10,669,893
일반회계	342,736,062	10,282,082
특별회계	12,927,050	387,812
기타특별회계	12,927,050	387,81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75,628	107,269
의료급여특별회계	1,140,289	34,209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994,476	29,834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0	60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3,748	2,812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62,000	7,86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1,684,688	50,541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15,141	454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519,745	75,592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621,335	78,6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및 포상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